

醫學的 査定基準에 관한 再評價

金炳極* · 孫泰林** · 權泰喜***

尹秉鶴**** · 金剛石*****

Medical Revaluation of Underwriting Manual

Kim, Byung-Kuck, M.D.* · Scn, Tae Hyu, M.D.** · Kwon, Tae Hee, M.D.***

Yoon, Byung Hak, M.D.**** · Kim, Kang Sueck, M.D.*****

I. 序 論

査定基準表는 各種疾患의 缺陷別 平均死亡 經驗을 기초로해서 作成한 것이고, 醫學的 選擇에 있어서의 基本指針인 同時에 준수해야할 規則이다. 그러나 모든 病名이 網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標準을 提示한 것에 不可하며, 精密度가 높은 固定된 尺度라기보다는 平均值를 表示하는 尺度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醫學的 查定の 實際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의 要因을 分析해서 選擇理論에 合當한 査定基準을 適用해야 할 것이다.

現在 6個 生保社에서 共同으로 使用하고 있는 査定基準表는 1977年 3월에 6個 生保社 醫長會議에서 심의 채택하였고 使用한지 7年이 經過하였다.

그동안 많은 疾患의 死亡率이 改善되었고 또 約款解釋上의 問題(制定當時의 約款으로는 災害即 外因에 依한 廢疾만을 認定하였으나, 現在

約款에서는 疾病에 依한 廢疾도 認定함)와 現在 開發販賣되고 있는 大部分의 商品中에는 傷害保障을 附加하여 販賣하는 등 制定當時와 比較해서 標準體로서의 評價方法上의 問題가 있어 이에 改定作業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것이다.

II. 現行 査定基準表와 約款上의 問題點

1979年 7月 生命保險會社와 再保險會社 間에 締結된 再保險特約書에 依하면, 現行 査定基準表를 使用했을 경우 死亡指數(評點) 135點까지를 標準體로서 契約 成立시킬 수 있다. 따라서 表 1에 例舉한 疾患(所見)은 當然히 標準體로서 契約成立을 할수 있으나,

- ① 片眼盲(失明)은 傷害等級 제 3 級에,
- ② 難聽은 兩側의 경우는 傷害等級 2 級에, 片側(一側)의 경우는 傷害等級 5 級에 該當되고,
- ③ 四肢切斷(上·下肢切斷)에 경우에는 그 程度에 따라 傷害等級 2 級 또는 3 級에 해당되므로,

現行査定基準表上에서는 標準體로서 評價할수 있다 할지라도 現在 所見自體가 尙해보상對象이 기 때문에 契約을 謝絶할 수 밖에 없다.

또 生命保險의 基本理念은 世帶主의 死亡에 依해서 생기는 家族의 經濟的인 損失을 保障하는데 있고 이 所得의 喪失原因은 반드시 死亡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災害 또는 疾病에 依해서

*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Daehan Life Insurance Co. Ltd.
** 第一生命保險株式會社
Jae Il Life Insurance Co. Ltd.
*** 東邦生命保險株式會社
Dong Bang Life Insurance Co. Ltd.
**** 興國生命保險株式會社
Hung Kuk Life Insurance Co. Ltd.,
***** 大韓教育保險株式會社
Dae Han Kyouh Life Insurance Co. Ltd.

도 高度의 身體障害을 永遠히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態를 癱疾이라고 하며 被保險者의 癱疾狀態에 對해서 어떠한 特典을 부여하는 目的으로 傷害(災害)以外的 疾病에 依한 癱疾도 同等하게 認定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約款上의 癱疾條項에

- ①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②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③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를 추가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被保險者의 立場에서는 癱疾條項의 擴大解釋이 有利하지만 全身癱疾이 아닌 部分的인 癱疾 即 身體의 一部分의 缺損 또는 部分的인 機能喪失에 對해서는 傷害의 경우에서만 保障認定을 받고, 一般疾病의 경우에는 保障을 받을 수 없다는 利益平等의 原則上의 모순이 있다.

即 災害(傷害)關係約款에는 對象이 되는 不意의 事故의 定義를 「偶發的인 外來의 事故」라고 定하고 있다. 또 「但 疾病 또는 體質的인 要因을 가지고 있는 者로서 輕微한 外因에 對하여 發病하거나 또는 그 症狀이 더욱 惡化되었을 때에는 그 輕微한 外因은 偶發的인 外來의 事故로 認定하지 않는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即 輕微한 外因이 原因은 아니고 誘因으로서 發病 또는 惡化된 內因性疾患은 不意의 事故로서는 取扱하지 않는다.

例를 들면 自宅에서 아기를 보다가 發病한 脊髓炎에 依한 下半身麻痺는 疾病이지 不意의 事故로서는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Ⅲ. 查定評點上의 問題點

生保 6個社와 再保險會社間에 이루어진 再保險契約 特約書(1979. 7. 3)에 依하면, 1977年 生命保險協會가 發刊한 “查定基準表”를 使用할 것이며, 死亡指數(評點) 135點까지를 標準體保險으로 契約成立을 시킬 수 있고, 原受保險會社의

醫長(社醫包含)의 판단에 따라 遞增性危險이 아닌 被保險體에 對해서는 評點 150點까지도 標準體로서 契約을 成立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現在 D社에서는 標準下體保險을 販賣하고 있으며 또 다른 D會社에서도 標準下體保險 販賣를 準備中에 있다.

本來 先進外國에서는 標準體의 評點基準을 124~125點으로 잡고 있으며 評點 125~126點以上을 標準下體로 認定하고 있다.

1977年 現行基準表를 審의 채택할 當時 우리 國內에서는 標準下體保險 販賣를 하지 않았으며 125~135點 사이에 該當하는 比較的 良質의 被保險體를 吸收하기 爲하여 變則的으로 標準體의 上限基準線을 135點으로 引上決定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제 前述한 바와같이 國內에서도 標準下體保險을 販賣 또는 販賣하려하는 會社가 續出하므로, 標準體의 基準評點을 先進外國과 같이 124~125點으로 再調整해야 한다는 것이다.

表 2는, 一般的인 外科系列에 屬하는 疾病名과 그의 評點이다.

例를 虫垂炎과 서혜부허니아에 들면, 現在 病醫院에서 手術했을 경우 手術 후 1週日이면 完治退院되고, 2週日 後면 重勞動을 除外한 日常生活 또는 事務從事 등의 社會復歸가 可能하다. 따라서 手術後 合併症이 없는 限 完治後 2週日이 經過되었으면 指數의 加點이나 削減條件 없이 評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結 論

醫學의 發展에 따라 壽命이 延長되고 各種疾病의 치료기간이 短縮되어 가고 있다.

또 消費者保護라는 觀點에서 保險約款의 內容이 保障機能의 擴大化 方向으로 變해가고 있다.

이에따라 現行 使用하고 있는 查定基準表의 모순點이 있어 몇 가지 例를 들어 이의 改定意 見을 提示하였다.

保險業에 從事하는 여러분들의 더좋은 意見提示를 期待하며, 많은 協助를 바란다.

表 1.

査定基準表	評點	約款內容	等級
VI. 感覺器疾患			
6) 盲(失明)			
㉠ 片眼: 外傷에 의한 경우	0	한쪽눈의 視力을 完全 永久히 잃었을 때	제 3 급 ①항
疾病에 의한 경우	E ₁		
㉡ 兩眼	E ₃		
注: ①失明後 1年 以上을 經過하고 疾病이 固定된 경우에 限함			
②現在 職業이 있을 경우에 限함			
11) 難聽	0	두 귀의 聽力을 完全 永久히 잃었을 때	제 2 급 ④항
		한 귀의 聽力을 完全 永久히 잃었을 때	제 5 급 ④항
XII. 骨 및 運動器疾患			
8) 脊椎彎曲			
現症 輕度	10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運動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3 급 ⑥항
9) 四肢切斷			
一側上肢切斷			
肘關節以上	30	한팔 및 한다리를 完全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제 2 급 ①항
肘關節以下	10		
一側下肢切斷			
膝關節以上	30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關節중 2關節을 完全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제 3 급 ②항
膝關節以下	10		

表 2.

査定基準表	評點	變更 가능한 評點
IX. 消化器疾患		
8) 虫垂炎		
수술한 경우	D	
治後 0~1M	S ₁ ~0	8), 12) 術後完治 0
1M~		
12) 헤르니아		
現症: 還納 가능한 境遇	30~50	
21) 膽石症 膽囊炎		
手術한 境遇 治後		完治後
0~1Y	D	0~6M D
1~2Y	S ₂	6M~1Y S ₁
2Y~	S ₁ ~0	1Y~ 0
X. 性尿器疾患		
9) 腎結石		
尿管結石		
膀胱結石		
手術(結石摘出術)을 한 境遇		
治後 0~6M	D	~6M D
6M~1Y	S ₃	6M~1Y S ₁
1Y~2Y	S ₂	1Y~ 0
2Y~	S ₁ ~0	
10) 外傷性 腎摘出		
治後 0~1Y	D	6M~ 0
1Y~	30~50	
妊娠 ~6M	10~30	8M미만 0
7M~	D	
제왕절개 치후	30~50	치후 ~3M 30~50
임신오저 치후	30~50	3M~ 0
		" 0